

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

2025

○ 보건관리전문기관(2026년)

주요 개편 사항

- (개편)서류중심의 평가에서 직업건강분야 유해인자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원적인 개선활동 노력을 평가하는 현장중심의 근로자 건강보호 업무수행 평가*로 전환
 - * (기준)B.2작업환경·건강관리 1개 평가항목→(개편)B.2작업환경관리, B.3근로자 건강보호 2개 지표로 세분화
 -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 유해인자 관리항목을 확대(5종→ 10종, 온·습도 등 이상기후 추가) (B.2.②)
 -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하여 간접평가(위탁 사업장의 과태료 처분 비율) 기준을 직접평가(유해인자 감소대책에 대한 개선 이행율)로 지표 개편(B.2.④)

■ : 신설지표, ■ : 지표이동, ■ : 지표통합

분야	평가 항목	세 부 평 가 내 용	지표 적용		
			법인	지도사	
합 계			1,000	1,000	
A. 운영 체계 (200)	소계		200	100	
	1. 운영 관리	① 운영규정·기술지도—매뉴얼 적정성	50	25	
		② 연간 사업계획 수립·실행의 적정성	50	25	
	2. 인력 관리	① 고급인력 확보	50	-	
		② 역량개발 노력 ⇒A.1.①, D.1.① 이동	50	50	
소계			600	700	
B. 업무 충실성 (600)	1. 위험성 평가	① 위험성평가가 실시 지도	50	75	
		② 위험요인 파악·위험성 결정 등 적정성 지도	50	75	
		③ TBM 등 위험성평가 결과 전달 지도	50	75	
	2. 작업 환경·건강 관리	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	50	75	
		② 유해인자 관리 지도	50	50	
		③ 제도이행 관리 지도	50	50	
		④ 보건·안전·마케팅 사업장 관리	50	50	
		⑤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	50	50	
		⑥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	50	50	
		⑦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도	50	50	
		⑧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	50	50	
		⑨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	50	50	
	소계			200	200
	1. 작업 환경 개선 등	①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	50	50	
②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실적		50	50		
③ 작업환경개선 실적		50	50		
2. 만족도	① 사업장 만족도	50	50		
소계			±100	±100	
D. 가감 점 (±100)	1. 가점	① 카탈리스트 우수사례, 포상, 수수료	+100	+100	
	2. 감점	① K2B 부적정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	-100	-100	

평가 항목	세 부 평 가 내 용	지표 적용		비고
		법인	지도사	
합 계		1000	1,000	
소계		200	100	
1. 영리관리	① 운영규정·지침·교육 계획 수립·이행	100	100	지표 통합 배점 상향
2. 인력관리	① 고급인력 확보	100	-	배점 상향
소계		600	700	
1. 위험성평가 (100)	①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	50	50	3개 항목 → 2개 항목 150점 유지 (지표통합)
	② 위험요인 파악, 위험성 결정 등 적정성 지도	100	150	
2. 작업환경관리 (250)	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	25	25	50→25점 배점하향
	② 유해인자 관리 지도	50	75	지도사 배점 상향 (현장업무 강화)
	③ 제도이행 관리 지도	50	50	-
	④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	75	100	지도사 배점 상향 지표 변경(신설)
3. 근로자건강보호 (250)	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도	50	50	항목 세분화 (작업환경·건강관리) 평가 항목 순서 변경
	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	50	50	
	③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	50	50	
	④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	50	50	
	⑤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	50	50	
소계		200	200	
1. 작업환경개선 등	①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	75	75	3개항목 →2개항목 통합 (프로그램 통합평가)
	② 작업환경개선 실적	75	75	
2. 만족도	① 사업장 만족도	50	50	-
소계		±100	±100	
1. 가점	① 포상,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	+100	+100	불량사업장 통상적 산정면명
2. 감점	① K2B 부적정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	-100	-100	일부지표 이동

※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(과징금 부과)을 받은 경우, 총점 산정 후 등급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

□ 202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

분야	평가항목	세 부 평 가 내 용	전국·단일	지도사
	합 계		1,000	1,000
A. 운영 체계 (200)	소 계		200	100
	1. 운영관리	① 운영규정·지침·교육계획 수립·이행	100	100
	2. 인력관리	① 고급인력 확보	100	-
B. 업무 충실성 (600)	소계		600	700
	1. 위험성 평가 (150)	①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	50	50
		② 위험요인 파악, 위험성 결정 등 지도	100	150
	2. 작업환경 관리 (200)	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	25	25
		② 유해인자 관리 지도	50	75
		③ 제도이행 관리 지도	50	50
		④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	75	100
	3. 근로자 건강보호 (250)	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도	50	50
		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	50	50
		③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	50	50
		④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	50	50
		⑤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	50	50
C. 업무 성과 (200)	소계		200	200
	1. 작업환경 개선 등	①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	75	75
		② 작업환경개선 실적	75	75
	2. 만족도	① 만족도	50	50
D. 가감점 (±100)	소계		±100	±100
	1. 가점	① 포상,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등	+100	+100
	2. 감점	① K2B 부적정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	-100	-100

※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(과징금 부과)을 받은 경우, 총점 산정 후 등급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

A

운영체계(200점)

1. 운영관리		① 운영규정·지침·교육계획 수립·이행 (100점)							
평가기준		평가결과					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				
필수항목을 모두 만족한 경우		☐	1.0						
필수항목 중 1가지 누락된 경우		☐	0.8						
필수항목 중 2가지 누락된 경우		☐	0.6						
필수항목 중 3가지 누락된 경우		☐	0.4						
필수항목 중 4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		☐	0.2						
지표정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·지침·교육계획의 보유 및 실행 여부 평가									
평가내용 ☐ 평가 방법 ○ 기관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필수사항에 대하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규정·지침·교육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반영 및 실행 여부를 평가 ☐ 평가 기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필수항목 (6가지)</th> <th>반영(최신화)여부</th> <th>실행여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○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③ 기술자료 활용 계획 및 실적 ○ 보유장비(법정+추가장비)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④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⑤ 보유장비별 검·교정 주기 설정 ○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⑥ 직원 교육·훈련 계획 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필수항목 (6가지)	반영(최신화)여부	실행여부	○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③ 기술자료 활용 계획 및 실적 ○ 보유장비(법정+추가장비)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④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⑤ 보유장비별 검·교정 주기 설정 ○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⑥ 직원 교육·훈련 계획		
필수항목 (6가지)	반영(최신화)여부	실행여부							
○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③ 기술자료 활용 계획 및 실적 ○ 보유장비(법정+추가장비)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 ④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⑤ 보유장비별 검·교정 주기 설정 ○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⑥ 직원 교육·훈련 계획									
확인사항 ☐ 운영규정(매뉴얼, 지침, 교육·훈련계획) 등 증빙자료									

A	운영체계(200점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2. 인력관리	① 고급인력 확보 (100점/지도사 평가 제외)								
평가기준	평가결과								
[고급인력 평가기준]에 따른 인력									
지표정의									
고급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
☐ 평가 방법 ○ 국가기술자격증, 학위증, 임금지급대장 등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○ 평가대상 기간 중 1/2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고 현장 업무 수행여부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 ○ 법적 지정요건 외 기술등급 평가 ☐ 평가 기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유인력의 기술등급 (최대 100점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① 산업보건 관련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(30점×인원수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30점×인원수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②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(20점×인원수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20점×인원수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 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(최대 40점) -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-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10점×인원수 20점×인원수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배점은 ①~③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되, 보유인력 1명이 2가지 항목 이상 중복 되는 경우 한 가지만 인정		보유인력의 기술등급 (최대 100점)	점수	① 산업보건 관련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(30점×인원수)	30점×인원수	②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(20점×인원수)	20점×인원수	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(최대 40점) -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-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	10점×인원수 20점×인원수
보유인력의 기술등급 (최대 100점)	점수								
① 산업보건 관련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(30점×인원수)	30점×인원수								
②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(20점×인원수)	20점×인원수								
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(최대 40점) -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-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	10점×인원수 20점×인원수								
확인사항									
☐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현황, 학위증, 관련 공문, 재직증명서 등						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1. 위험성 평가		①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 (50점)																			
평가기준		평가결과																	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																
모든 필수항목을 적정하게 지도한 경우		☐ 1.0				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1개소인 경우		☐ 0.8				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		☐ 0.6				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3개소인 경우		☐ 0.4				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4개소 이상인 경우		☐ 0.2																			
지표정의																					
사업장 규모·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 및 확산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지도 내용 평가												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												
☐ 평가 방법 ○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-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의 경우,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을 비율로 평가 ※(예시)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3개소이며,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$\Rightarrow 2 / 3 \times 100 = 66.6\% \approx 5\text{개소 중 } 3\text{개소인 경우로 "20점" 적용}$ ○ 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 일치 여부 및 내용 누락 여부 확인 ○ 평가기준에 따라 상태보고서 및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지도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항목 수를 평가 ☐ 평가 기준 ○ 방문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필수항목별 적정 지도 여부 확인 ○ 방문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필수항목별 지도 여부 확인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필수항목</th> <th>적정 지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여부(관리감독자 역할 부여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 및 실시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제시(화학물질 CHARM* 기법, 빈도강도법, 저중고 3단계 판단법, 체크리스트법, 핵심요인 기술법 등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록 및 보존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(노출수준 등급 × 유해성 등급 = 위험성 등급) ; MSDS,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결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실시 안내 ※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 적정 지도여부 중심으로 평가(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)				구분	필수항목	적정 지도	1	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여부(관리감독자 역할 부여)		2	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 및 실시		3	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제시(화학물질 CHARM* 기법, 빈도강도법, 저중고 3단계 판단법, 체크리스트법, 핵심요인 기술법 등)		4	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		5	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록 및 보존	
구분	필수항목	적정 지도																			
1	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여부(관리감독자 역할 부여)																				
2	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 및 실시																				
3	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제시(화학물질 CHARM* 기법, 빈도강도법, 저중고 3단계 판단법, 체크리스트법, 핵심요인 기술법 등)																				
4	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																				
5	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록 및 보존																				
확인사항																					
☐ 위탁사업장 현황,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(5개소), 위험성평가 체계구축 컨설팅 결과 등 증빙자료																		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1. 위험성 평가	② 위험요인 파악, 위험성 결정 등 지도 (100점/ 지도사 150점)															
평가기준	평가결과													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											
모든 사업장을 적정하게 지도한 경우	☐ 1.0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1개소인 경우	☐ 0.8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	☐ 0.6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3개소인 경우	☐ 0.4			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4개소 이상인 경우	☐ 0.2															
지표정의																
위탁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에 대한 적절한 기술지도 여부 평가							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							
□ 평가 방법 ○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 및 위험성평가표 확인 <선정 우선 순위> -(1차) 작업환경 고위험 사업장: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(1/2) 초과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(1) -(2차) 유해인자별 고위험 사업장 : 관리대상유해물질(특별관리물질) 취급, 분진취급, 근골격계질환 발생, 밀폐공간 보유 -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의 경우,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을 비율로 평가 ※(예시)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3개소이며,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⇒ 2 / 3 x 100 = 66.6% ≒ 5개소 중 3개소인 경우로 "40점/지도사 60점" 적용 ○ 사업장 특성에 맞는 중점 위험 공정 파악을 통해 현실 적용성을 고려한 위험성 결정 등 적정 지도 여부 평가 ○ 위탁사업장 현장 확인(2개소 이상) 시 근로자 면담을 통해 TBM을 실시하지 않거나, 위험성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점수를 한단계 하향																
□ 평가 기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필수항목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적정 지도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위험요인 파악</td> <td>1 위험요인(취급물질 등 유해인자)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 유해위험요인(취급물질 등 유해인자) 파악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위험성 결정 등</td> <td>4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결정 방식 채택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여부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※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 적정 지도여부 중심으로 평가(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)		구분	필수항목	적정 지도	위험요인 파악	1 위험요인(취급물질 등 유해인자)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		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		3 유해위험요인(취급물질 등 유해인자) 파악		위험성 결정 등	4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결정 방식 채택		5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여부	
구분	필수항목	적정 지도														
위험요인 파악	1 위험요인(취급물질 등 유해인자)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															
	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															
	3 유해위험요인(취급물질 등 유해인자) 파악															
위험성 결정 등	4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결정 방식 채택															
	5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여부															
확인사항 ☐ 위탁사업장 현황, 사업장관리카드, 위험성평가표, 상태보고서(5개소) 등 증빙자료																

B	업무 충실성(600점)												
2. 작업환경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(25점)													
평가기준	평가결과										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								
모든 사업장을 적정하게 지도한 경우	☐ 1.0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1개소인 경우	☐ 0.8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	☐ 0.6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3개소인 경우	☐ 0.4												
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4개소 이상인 경우	☐ 0.2												
지표정의													
기술지도 시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반영 지도 여부 평가													
평가내용													
□ 평가 방법 ○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-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의 경우,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을 비율로 평가 ※(예시)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3개소이며,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$\Rightarrow 2 / 3 \times 100 = 66.6\% \approx 5\text{개소 중 } 3\text{개소인 경우로 "10점" 적용}$ ○ 기술지도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상태보고서 내용의 적정 지도 여부를 평가 ○ 필수항목은 기관의 기술지도 및 조언에 대한 사항이 보고서 등 기록물과 현장 등에서 증빙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인정 □ 평가 기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필수항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적정 지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태보고서에 지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의 개선결과를 확인하도록 지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방침·목표를 게시하도록 지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③ 위험성평가의 정기적 실시, 위험요인 개선 및 현장 근로자 참여 지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④ 근로자에게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하도록 지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⑤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활동실적을 검토하고 지속 개선하도록 지도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필수항목	적정 지도	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태보고서에 지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의 개선결과를 확인하도록 지도		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방침·목표를 게시하도록 지도		③ 위험성평가의 정기적 실시, 위험요인 개선 및 현장 근로자 참여 지도		④ 근로자에게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하도록 지도		⑤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활동실적을 검토하고 지속 개선하도록 지도	
필수항목	적정 지도												
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태보고서에 지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의 개선결과를 확인하도록 지도													
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방침·목표를 게시하도록 지도													
③ 위험성평가의 정기적 실시, 위험요인 개선 및 현장 근로자 참여 지도													
④ 근로자에게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하도록 지도													
⑤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활동실적을 검토하고 지속 개선하도록 지도													
※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(단, 안전관리전문기관 지도 시 누락사항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반영)													
확인사항													
☐ 위탁사업장 현황, 사업장관리카드, 상태보고서(5개소) 등 증빙자료, 위탁사업장(2개 이상) 기록물 및 현장 관계자(사업장 안전 업무 담당자 등) 면담										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2. 작업환경 관리

② 유해인자 관리 지도 (50점/지도사: 75점)

평가기준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
유해인자 관리 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	☐ 1.0
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95% 이상인 경우	☐ 0.8
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90% 이상인 경우	☐ 0.6
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85% 이상인 경우	☐ 0.4
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85% 미만인 경우	☐ 0.2

지표정의

사업장 규모·작업별 특성에 맞는 유해인자 관리 지도의 적정성 평가

평가내용

□ 평가 방법

-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
-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(적정율 평가),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
- 상태보고서의 유해인자 관리 지도의 적정성 여부 확인
- 기관의 위탁사업장 중 방문 사업장(2개소 이상)을 공단에서 선정

□ 평가 기준

- 상태보고서의 지도내용을 필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정지도 여부를 평가(필수항목 이외의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)
- 기술적인 대책없이 미흡한 사항만 지적하거나, 기술적 대책제시가 일반적인 내용*이면 미흡으로 분류

* 예) (지적) ○○공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→ (대책) ○○공정 국소배기장치 설치

- 다음의 사항 확인 시 1개소당 1단계 하향 평가 (**현장평가 확인사항**)

- ① 위험성 평가결과(B.1.②) 도출된 유해인자 중 기술지도가 필요함에도 누락된 경우
 - ② 법적으로 공학적 대책 수립이 필요*함에도 관리적 사항(교육, 보호구)만 기재된 경우
- * 예) 안전보건규칙 제453조(설비기준 등)제2항에 따른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지도
- ③ 필수항목에 대한 지도내용이 허위인 경우

« 적정 이행 판단 기준 »

- 해당 필수항목에 대한 기술지도의 적정성은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적용

- ① 사업장관리카드에 작업공정별 발생하는 유해·위험인자는 참고자료*를 통해 파악(해당시) 하여야 함
* 참고자료 (작업환경측정 결과표, 특수건강진단 결과표,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등)

- ② 파악된 유해인자(필수항목)에 대한 적정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평가함

- ③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공정(장소), 위험요소에 대한 현재의 조치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
· (**허용 가능한 범위인 경우**) 현재의 조치사항을 상태보고서에 기록하고 필요시 추가 권고사항 지도

- (**허용 불가능한 범위인 경우**) 현재의 조치에 대한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기술지도 필요

* 기술지도 받은 사업장에서 개선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해인자에 대한 공정(장소) * 위험요소 * 개선대책 등 3개 요소가 포함된 기술지도 내용이 상태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.

확인사항

- 위탁사업장 현황, 사업장관리카드, 위험성평가표, 상태보고서(5개소) 등 증빙자료, 위탁 사업장(2개 이상) 기록물 및 현장 확인

□ 평가 산식

$$\text{적정율(\%)} = \frac{\text{적정건수(합계)}}{\text{총건수*(합계)}} \times 100$$

* 선정 사업장 수(5개소) × 필수 항목 수(최대 10건) = 최대 50건(비해당 항목은 산식에서 제외)

구분	필수항목	총건수	적정여부	
			적정	미흡
합 계				
1	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2	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3	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4	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5	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6	온도·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('25.6.1. 개정·시행 내용 포함)			
7	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8	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9	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10	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2. 작업환경 관리		③ 제도이행 관리 지도 (5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제도이행 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		☐	1.0
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95% 이상인 경우		☐	0.8
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90% 이상인 경우		☐	0.6
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85% 이상인 경우		☐	0.4
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85% 미만인 경우		☐	0.2

지표정의	
사업장 규모·작업별 특성에 맞는 제도이행 관리 지도의 적정성 평가	
평가내용	
☐ 평가 방법 ○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-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(적정율 평가),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○ 상태보고서의 제도이행에 관한 지도의 적정성 여부 확인 ○ 기관의 위탁사업장 중 방문 사업장(2개소 이상)을 공단에서 선정 ☐ 평가 기준 ○ 상태보고서의 지도내용을 필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정지도 여부를 평가(필수항목 이외의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) ○ 다음의 사항 확인 시 1개소당 1단계 하향 평가 (현장평가 확인사항) ① 제도이행 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② 제도이행 지도 수행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* * 유해인자에 제도 이행 기술지도가 누락(예: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누락)되거나,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☐ 평가 산식 $\text{적정율(\%)} = \frac{\text{적정건수(합계)}}{\text{총건수*(합계)}} \times 100$ * 선정 사업장 수(5개소) × 필수 항목 수(최대 3건) = 최대 15건(비해당 항목은 산식에서 제외)	

구분	필수항목	총건수	적정여부	
			적정	미흡
합 계				
1	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기술지도			
2	작업환경측정 제도 이행 기술지도			
3	건강진단 제도 이행 기술지도			

확인사항	
☐ 위탁사업장 현황, 사업장관리카드, 위험성평가표, 상태보고서(5개소) 등 증빙자료, 위탁 사업장(2개 이상) 기록물 및 현장 확인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2. 작업환경 관리

④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 (75점/지도사: 100점)

평가기준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
이행여부가 모두 적절한 경우	☐ 1.0
이행율이 80% 이상인 경우	☐ 0.8
이행율이 60% 이상인 경우	☐ 0.6
이행율이 40% 이상인 경우	☐ 0.4
이행율이 40% 미만인 경우	☐ 0.2

지표정의

위탁사업장의 산업보건 관련 유해인자에 대한 감소대책 이행여부 평가

평가내용

□ 평가 방법

-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
 - 유해인자 관리지도(B.2.②) 선정 우선순위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평가
 -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(이행율 평가),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
- 기관의 위탁사업장 중 방문 사업장(2개소 이상)을 공단에서 선정

□ 평가 기준

- B.2.②(필수항목 10개)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
- 감소대책의 개선기한(단·중·장기적) 미준수 및 이행 관련 관리부실
 - ※ 6개월 이상의 개선기한이 필요한 경우 잠정적인 조치 미이행시 부적정으로 평가
 - 다음의 사항 확인 시 1개소당 1단계 하향 평가 (**현장평가 확인사항**)
 - ① 부정행위 적발 시 (서류와 현장확인 결과가 불일치 한 경우 등)
 - ② 감소대책 이행 후 위험성 감소 여부 미확인
 - ※ 감소대책 이행 후에도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의 위험성으로 판단 시 부적정으로 평가(단, 재개선을 실시한 경우 제외)
 - ※ D.1.①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조치를 의뢰한 사업장은 감소대책 이행 확인 부적정에서 제외

◎ 적정 이행 판단 기준 : 공정(장소) * 위험요소 * 개선대책 등 3개 요소가 포함된 기술지도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개선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 내용 평가

적정 예시) : 00공정에 00작업 시 취급하는 관리대상물질 노출로 인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포위식 국소배기장치 설치(제어풍속 0.4m/s 이상)

부적정 예시) : 관리대상물질 취급장소에 건강보호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

□ 평가 산식

$$\text{적정율(\%)} = \frac{\text{적정 이행건수(합계)}}{\text{지도건수*(합계)}} \times 100$$

* 선정 사업장 수(5개소) × 필수 항목 수(최대 10건) = 최대 50건(비해당 항목은 산식에서 제외)

구분	필수항목	지도건수	적정 이행건수
합 계			
1	유해인자 관리 지도(B.2.② 10개 항목)		

확인사항

- 위탁사업장 현황, 사업장관리카드, 위험성평가표, 상태보고서(5개소) 등 증빙자료, 위탁사업장(2개 이상) 기록물 및 현장 확인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3. 근로자 건강보호		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(50점)	
평가기준			평가결과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절한 경우			☐ 1.0
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80% 이상 적절한 경우			☐ 0.8
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60% 이상 적절한 경우			☐ 0.6
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40% 이상 적절한 경우			☐ 0.4
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40% 미만 적절한 경우			☐ 0.2
지표정의			
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 ○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및 유해요인 조사 현황에 대한 DB 제시 ○ 평가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,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보유사업장 우선 선정하되, 선정이 어려울 경우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*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*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,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, 도소매·음식·숙박업, 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,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-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,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,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, 무리한 힘·부자연스런자세·반복동작의 감소방법 제시 등 "지도의 적정성"과 "재확인 지도의 적정성"을 평가 ○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(건강진단 시기,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) 예) '25년 평가 시('24년 1년간 실적 평가) '24년도 상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'24년도 하반기에 사후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 ※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,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☐ 평가 산식 $\text{적정율}(\%) = \frac{\text{적정 사업장수}}{\text{선정 사업장수}} \times 100$ ☐ 평가 기준 ○ "지도의 적정성"과 "재확인 지도의 적정성"이 모두 "양호"한 경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 - 지도의 적정성 :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,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 및 실시여부,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, 바른자세, 스트레칭, 체조, 반복동작 감소방법 제시, 중량물 제한, 유해성주지 등 지도내용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"양호"로 평가 -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 : 평가기간 내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내용에 대해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, 미이행시 재지도 하는 경우 "양호"로 평가 ○ 현장 평가결과(2개소)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,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☐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및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에 대한 DB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3. 근로자 건강보호		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(5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모두 적절한 경우		☐ 1.0	
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80% 이상 적절한 경우		☐ 0.8	
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60% 이상 적절한 경우		☐ 0.6	
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40% 이상 적절한 경우		☐ 0.4	
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40% 미만 적절한 경우		☐ 0.2	
지표정의			
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과 업무상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(군)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			
평가내용			
☐ 평가 방법 ○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현황에 대한 DB 제시 ○ <u>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 발생 사업장, 감정노동 종사 직종 및 보유 사업장(콜센터 상담원 및 유통업 판매업무, 운수업 운전자, 병원 간호사, 요양보호사, 보육시설 유치원·보육교사 등)</u>을 우선 선정 하고, 장시간 근로,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,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을 포함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상태보고서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관련 기록물 확인 - 감정노동평가(직장내 괴롭힘 포함),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작업전환, 휴식시간 배분, 상담치료,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등 지도내용의 적정성 확인 ※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,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☐ 평가 산식 $\text{적정율}(\%) = \frac{\text{적정 사업장수}}{\text{선정 사업장수}} \times 100$ ☐ 평가 기준 ○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의 적정성 : 직무스트레스 위험요인 고위험군 파악*, 위험요인 고위험군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개선지도** 내용이 적절한 경우 "적정"으로 평가 *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(KOSS), 사회심리적지수(PWI), 감정노동평가지수 등 평가도구 활용 여부 ** 기관 연간계획서를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사업장으로 대상 선정하여 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에 따른 예방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확인 ○ 현장 평가결과(2개소)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,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			
확인사항			
☐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, 당뇨병 유소견자 현황 DB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3. 근로자 건강보호		③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(5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		□ 1.0	
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80% 이상 적정한 경우		□ 0.8	
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60% 이상 적정한 경우		□ 0.6	
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40% 이상 적정한 경우		□ 0.4	
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40% 미만 적정한 경우		□ 0.2	
지표정의			
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 및 사후 지도 등 의사 또는 간호사 직무 중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의 적정성 평가			
평가내용			
□ 평가 방법 ○ 기관에서는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, 당뇨병 D₂, 또는 D_N 판정자 현황에 대한 DB 제시 ○ 고혈압, 당뇨병에 의한 유소견자(D₂) 또는 D_N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상태 보고서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관련 기록물 확인 - (사후지도대상) 고혈압, 당뇨병 기저질환자이거나, D₂ 또는 D_N 판정 받은 근로자 - (평가내용방법) 사후지도대상에 대한 예방지도 실시내용의 적정성 평가 ○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(건강진단 시기,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) 예) '25년 평가 시('24년 1년간 실적 평가) '24년도 상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'24년도 하반기에 사후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(의사 또는 간호사 방문주기를 고려) ※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,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			
□ 평가 산식			
$\text{적정율(\%)} = \frac{\text{사후지도 실시 근로자수}}{\text{사후지도 대상 근로자수}} \times 100$			
□ 평가 기준			
※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: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*, 고위험군에 대해 면담을 통한 사후지도실시 및 확인·재지도 내용이 적정한 경우 "적정"으로 평가 * 발병위험도 평가에 있어 ① KOSHA-Guide활용, ② 자체 검진센터를 통해 확보한 발병위험도 결과, ③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 중 택1하여 뇌심질환 예방지도를 위한 노력도를 확인 ○ 현장 평가결과(2개소)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,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			
확인사항			
□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, 당뇨병 유소견자 현황 DB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3. 근로자 건강보호		④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(5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를 80% 이상 실시한 경우		□ 1.0	
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를 60% 이상 실시한 경우		□ 0.8	
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를 40% 이상 실시한 경우		□ 0.6	
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를 20% 이상 실시한 경우		□ 0.4	
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를 20% 미만 실시한 경우		□ 0.2	
지표정의 건강진단결과 체계적인 유소견자, 요관찰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 및 간호사의 직무 중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지도 실시여부를 평가			
평가내용 □ 평가 방법 ○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실시현황에 대한 DB제시 ○ 평가자는 관리사업장 중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(D), 직업병 요관찰자(C1) 발생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하여 상태보고서 및 건강상담카드 등 평가 (건강진단 후 또는 질병 진단 후 업무적합성평가 결과, '다', '라'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 우선 선정) - (사후지도대상) 수탁사업장의 건강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(D₁, D₂, D_N) 및 직업병 요관찰자(C₁) - (사후지도내용) 작업배치,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, 상담 및 영양지도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적정 실시 여부 평가(의사 또는 간호사 방문주기 고려) ○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(건강진단 시기,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) 예) '25년 평가 시('24년 1년간 실적 평가) '24년도 상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'24년도 하반기에 사후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 ※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, 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□ 평가 산식 $\text{적정실시율(\%)} = \frac{\text{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적정 실시 근로자수}^*}{\text{사후지도 대상 근로자수}} \times 100$ * 연간 1회 이상 사후지도를 실시한 근로자수 □ 평가 기준 ○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- 사후지도 대상 및 실시 근로자수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 "최하점" 부여 ○ 현장 평가결과(2개소) 사후지도 실시내용이 허위이거나,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			
확인사항 □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실시현황 DB(기관), 공단 통계자료 활용			

B

업무 충실성(600점)

3. 근로자 건강보호	⑤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(의사) (50점)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평가기준</th> <th>평가결과</th> </tr> <tr> <td>총점 (배점×평가결과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80% 이상 실시한 경우</td> <td>☐ 1.0</td> </tr> <tr> <td>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60% 이상 실시한 경우</td> <td>☐ 0.8</td> </tr> <tr> <td>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40% 이상 실시한 경우</td> <td>☐ 0.6</td> </tr> <tr> <td>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20% 이상 실시한 경우</td> <td>☐ 0.4</td> </tr> <tr> <td>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20% 미만 실시한 경우</td> <td>☐ 0.2</td> </tr> </table>		평가기준	평가결과	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8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1.0	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6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0.8	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4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0.6	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2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0.4	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20% 미만 실시한 경우	☐ 0.2
평가기준	평가결과													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												
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8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1.0														
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6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0.8														
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4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0.6														
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20% 이상 실시한 경우	☐ 0.4														
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를 20% 미만 실시한 경우	☐ 0.2														
지표정의	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유도(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포함)하기 위해 산업보건의 직무 중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실시 여부 및 업무적합성평가 지도·조언 여부 평가														
평가내용	□ 평가 방법 ○ 평가자는 업무상질병자, 업무상질병 유소견자(D1) 발생 사업장 중 5개소 이상, 산업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상태보고서 및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 기록물 확인 - 평가대상기간 내 업무상질병자 발생, 질병 유소견자(D1)를 우선 대상으로 평가 (단, 대상이 없는 경우 소음성난청, 진폐, 질병 유소견자(DN), 일반질병 유소견자(D2) 대상으로 기관에서 수행한 결과 선정) - 산업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(출퇴근 재해 포함) ○ 업무상질병 판정자에 대한 질병발생 원인 조사(작업환경, 근무방법 등)를 실시하고, 그에 따른 적절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지도 및 실시 여부를 평가 ○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후 업무복귀 시 의사의 업무적합성 평가 여부 확인 ○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(건강진단 시기,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) 예) '25년 평가 시('24년 1년간 실적 평가) '24년도 상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'24년도 하반기에 사후 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(의사의 방문주기를 고려하여 평가) ※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,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(대상이 없는 경우, 기관에서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며, 불일치한 경우 최저점 부여) □ 평가 산식 $\text{적정실시율(\%)} = \frac{\text{적정 실시 근로자수(건강장해 원인조사 + 업무적합성평가)}}{\text{대상 근로자수(건강장해 원인조사 + 업무적합성평가)}} \times 100$ □ 평가 기준 ○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○ 업무적합성 평가지도의 적정성 : KOSHA 가이드(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)를 준용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○ 현장 평가결과(2개소)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실시내용이 허위이거나,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☐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실시현황 DB(기관), 공단 통계자료 활용														

C

업무성과(200점)

1. 보건관련 프로그램 등		①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(75점)
평가기준		평가결과
평가기준에 따른 취득 점수		
지표정의	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장에서 운영하여야 하는 보건관련 프로그램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·노력이 반영된 성과를 확인	
평가내용	☐ 평가 방법 ○ 평가 대상은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 실적 평가 - 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5가지 프로그램 시행 실적* 제시 * ① ~ ⑤ 중 해당사업장 대상으로 운영성과가 있는 실적 <법적 보건관련 프로그램>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, ②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, ③ 청력보존프로그램, ④ 호흡기보호프로그램, ⑤ 건강증진프로그램(금연, 운동, 절주, 영양, 스트레스 관리) ○ 기관에서 KOSHA-Guide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(양식)을 제공하고 있으나,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기술지도 시 확인 ○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: 프로그램별 작성 상태가 누락없이 양호한 경우(사업장 현황, 평가서 작성상태 등), 교육·훈련 실시 결과 확인 등(※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) ☐ 평가 산식 ○ 적정 사업장(최대 5개소) 수 × 15점 ☐ 평가 기준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- 유해요인조사, 작업환경 개선, 의학적 관리, 교육·훈련,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→ 계획에 따른 시행여부 확인 ②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- 제619조 제1항 각 호(1~5호) 및 제2항 각 호(1~6호)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여부 확인 - 제621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 입장 및 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 확인 - 제640조에 따른 긴급 구조훈련을 6개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- 제641조 각 호(1~5호)에 대한 작업시작 시 주지 여부 확인 ③~④ 청력보존 프로그램 및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- 소음(분진)노출 평가, 소음(분진)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, 청력(호흡용)보호구의 지급과 착용, 소음(분진)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, 정기적 건강진단, 기록·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(호흡기질환)을 예방·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→ 계획에 따른 시행여부 확인 ⑤ 건강증진프로그램 - 「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」(KOSHA-GUIDE_H-162-2023)을 활용하여 P-D-C-A 기반으로 프로그램 주제별 「건강증진 활동 추진 계획 수립」, 「추진 활동 평가 및 환류」 여부 확인 ○ 현장 평가결과(2개소)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,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☐ 사업장별 프로그램 시행 실적	

C	업무성과(200점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1. 보건관련 프로그램 등	② 작업환경개선 실적 (75점)												
평가기준													
평가기준에 따른 취득 점수													
지표정의	기관에서 위탁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해요인 제거 또는 완화로 제시한 대책 등을 사업장에서 적정 실행하였는지 여부 평가												
평가내용	□ 평가 방법 ○ 평가 대상은 5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 실적 평가 ○ 기관에서 제시하는 작업환경개선 사례를 검토하여 판단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판단 * (先)기관의 기술지도에 의해 (後)사업장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한 ①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(구매내역서, 계산서, 작업환경 측정결과표 등) 또는 ②객관적인 측정값(유량, 조도 등)을 포함한 개선 전후 사진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□ 평가 산식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h style="width: 70%;">평가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최대점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평가결과</th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유해요인을 제거한 작업환경개선 실적(사업장수×15점/개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유해요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작업환경개선 실적 (사업장수×5점/개소) ※ 재정지원 사업(안전투자혁신사업, 건강일터조성지원)을 통한 실적 포함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점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평가기준	최대점	평가결과	계	75점		유해요인을 제거한 작업환경개선 실적(사업장수×15점/개소)	75점		유해요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작업환경개선 실적 (사업장수×5점/개소) ※ 재정지원 사업(안전투자혁신사업, 건강일터조성지원)을 통한 실적 포함	25점	
평가기준	최대점	평가결과											
계	75점												
유해요인을 제거한 작업환경개선 실적(사업장수×15점/개소)	75점												
유해요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작업환경개선 실적 (사업장수×5점/개소) ※ 재정지원 사업(안전투자혁신사업, 건강일터조성지원)을 통한 실적 포함	25점												
□ 평가 기준	○ (유해요인을 제거한 작업환경개선 실적 인정기준) - 화학적인자(분진 포함)에 대한 자재의 대체, 설비의 밀폐 등 공학적 개선을 실시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사업장으로 인정 -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을 제거한 실적이 있는 경우 - 기타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유해요인으로부터 노출을 차단한 실적이 있는 경우 ○ (유해요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작업환경개선 인정기준) -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을 완화한 실적이 있는 경우(예, 대차 등 중량물 운반 방법 개선) - 환기설비(전체환기, 국소배기장치) 개선 - 기타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유해요인으로부터 노출을 완화한 실적이 있는 경우												
확인사항	□ 기관에서 제시한 실적 사례 등												

C

업무성과(200점)

2. 만족도		① 위탁사업장 만족도 (50점)	
평가기준		평가결과	
총점 (배점×평가결과)			
만족도 조사결과 95점 이상인 경우		☐ 1.0	
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~95점 미만인 경우		☐ 0.8	
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~90점 미만인 경우		☐ 0.6	
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~85점 미만인 경우		☐ 0.4	
만족도 조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		☐ 0.2	
지표정의 기술지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위탁사업장의 만족도 평가			
평가내용 ☐ 평가 방법 ○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년도 수행사업장 현황을 K2B에서 내려받아 평가 ○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결과 점수에 따라 평가 ☐ 평가 기준 ○ 사업장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 ※ 위탁 실적은 있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(공단 포함)에 진정서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최하점수(10점)로 평가			
확인사항 ☐ 외부 리서치 전문업체 설문조사 결과			

D

가·감점(±100점)

1. 가점 ① 포상,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등 (+100점)

평가기준	최고점	평가결과
1) 산업보건 관련 정부·지자체·공단 포상 여부	+20점	
2)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참여도	+30점	
3) 불량사업장 고용노동부 통보	+20점	
4) 적정 수수료 - 전국 평균 대비 기관별 1인 평균 수수료율 90% 이상	+30점	

지표정의

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우수사례 발굴·가점 반영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

평가내용

□ 평가 방법

1)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표창장 제출로 평가

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			
포상 내역	가점	포상수	총점
총 합			
차관급 이상	15점		
차관급 미만	10점		

※ 차관급 이상: 대통령, 국무총리, 장관, 서울특별시장, 광역시·도지사, 공단 이사장, 국회의원

※ 차관급 미만: 고용노동부청지청장, 공단(교육원장, 인증원장, 본부장, 지사장), 지자체(시·도·군·구)

※ 기관 또는 수행인력이 두 가지 이상 지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

2) 산업보건 관련 정책 참여도(최대 30점)

안전문화 확산 활동(최대 30점, 다음 5가지 사례의 득점 합계로 평가)

연번	인정 항목	제한횟수	가점
1	산업보건 및 직업건강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본선진출 또는 우수사례 발표 기관 ※ 직업환경의학회 산업보건학회 직업건강간호학회 등 산업보건분야 민간학회 인정(지정인력 참여)	1	+10
2	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포럼·세미나 주제발표 ※ 1)과 중복인정 불가	1	+10
3	정부·지자체 등 주관 취약시기(폭염, 동절기 등) 안전보건활동 참여	1	+5
4	산업안전 관련 고용노동부 및 공단 세미나·정책회의 참여	3	+5
5	법정인력 전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산업보건분야 외부전문교육 이수(8hr 이상)	1	+10

※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공문, 사진 등 증빙 제출확인된 경우만 인정하며 항목별 중복 불인정

3) 불량 사업장 고용노동부 통보 건수(최대20점)

- 위탁사업장 중 기술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고의로 개선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(지방관서)에 통보한 사업장 1개소 당 5점 부여

4) 기술지도 수수료 계약율 (30점)

- 전국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 대비 해당 기관의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이 90% 이상인 경우 10~30점까지 가점 차등 부여

가. 평가 전 기관이 평균 수수료를 K2B 전산에 입력하고 기관별 평균 수수료를 합산하여 전국 평균 수수료를 산출(50인 이상 ~ 300인 미만)

나. 기관별 관리하고 있는 기술지도 사업장 90% 이상에 대해 평균수수료를 산정한 경우에 인정 가능

다. 전산 입력한 기관별 평균수수료의 신뢰성은 기관 평가 당일 평가반이 기관에서 5개~10개 사업장을 샘플링하여 확인하고 신뢰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가점 비부여

※ 수수료 입력 기준일은 평가대상 기간으로, 12월 31일 입력 분에 한함

□ 평가 산식

○ 적정 기술지도 수수료 계약율 산식

$$\text{적정 계약율} = \frac{\text{해당 기관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}}{\text{전국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}} \times 100$$

가점 수준 판단 기준

- ① 기관별 제출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수수료 계약금액을 기초로 전국 평균 수수료 산출
- ② 전국 평균 수수료 대비 기관 평균 수수료에 따른 가점 부여

구 분	전국 평균 대비 90% 이상	전체 평균 이상	전체 평균 대비 110% 이상
가 점	10	20	30

D

가 · 감점(± 100점)

2. 감점

① K2B 부적정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(-100점)

평가기준	최저점	평가결과
1) K2B 부적정 입력률	-100점	
2)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		

지표정의

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징벌적 불이익을 부여하고 K2B 입력 정확도에 대한 책임 유도를 통한 체계적 기술지도 성과 관리 정착

평가내용

□ 평가 방법

- 1) K2B 입력 현황 기준, 지연·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된 상태보고서의 입력 부적정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

평가 기준

- ① 입력 부적정 건수
 - 기한 내에 기술지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 - 기술지도보고서가 누락되어 제출된 경우
 - 사업장 특정 정보(사업장관리번호 및 개시번호) 누락 또는 오기
- ② 방문 평가 시 위탁사업장 입력 누락이 확인된 경우 "-40점" 부여

가. K2B 입력 부적정률 계산식

$$\text{K2B 입력 부적정률} = \frac{\text{입력 부적정 건수}}{\text{상태보고서 제출 필요 건수}} \times 100$$

※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, 단일 사유(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)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"입력 부적정 건수"에 미산입

※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

나. 부적정률에 따른 감점 수준

K2B 입력 부적정률	감점
K2B 입력 부적정 건이 없는 경우	0점
K2B 입력 부적정률이 1% 미만인 경우	-10점
K2B 입력 부적정률이 1% 이상 ~ 2% 미만인 경우	-20점
K2B 입력 부적정률이 2% 이상 ~ 3% 미만인 경우	-30점
K2B 입력 부적정률이 3% 이상인 경우	-40점

2)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지도·감독 결과, 시정조치·경고 처분 수준 평가

가. 시정조치·경고 처분 건 당 -15점 감점

※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(과징금 부과)을 받은 경우, 총점 산정 후 등급 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

평가 기준

- 평가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·경고처분에 따른 처분 확정일을 기준
- 지부(출장소)를 운영하는 기관은 행정처분 실적 합산하여 평가

확인사항

☐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기관 제출 실적, K2B 입력 실적을 현장 평가 시 확인 등